

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의 번 호 | 471 |
|-------------|-----|

제출연월일 : 1998. 04. 29.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코자 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당초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와 이륜동차 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항)
- 감면의 범위가 1가구 1차량에 한정됨에 따라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보는 범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항)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당초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까지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 도세정13400 - 170('98.03.16)호「지방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통보」

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궐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 제목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2항 제3항 및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p> | <p>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p> |
|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 <p>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p> |
| <p>(신설)</p> | <p>4. 이륜자동차</p> |
| | <p>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

